

研究論文

북한과 중국의 미국식 인권개념에 대한 입장

이 상 수*

I. 인권과 주권	III. 미국의 인권공세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입장
II. 북한 인권법에 대한 논쟁	IV. 결론: 한국의 정책대안

I. 인권과 주권

냉전시대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아성은 너무 견고해서 인권문제를 가지고 도전하기 힘든 이슈였다. 더구나 사회주의 국가인 경우는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은 자국의 체제에 도전하는 행위로 받아들여 아예 언급조차 꺼리는 문제였다. 그러나 9·11사건 이후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공세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도 르완다, 코소보, 체첸, 동티모르, 리베리아, 수단 등의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점차 “인권”이 “주권”에 우선할 수 있다는 새로운 국제규범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제54차 유엔총회에서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은 기존의 ‘국가주권’에 앞서는 개념으로 ‘개인주권’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어떠한 조항도 국경을 넘어서 타국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유엔의 역할을 시사하였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문제는 무력으로 간섭할 수 있는 정당한 관심사라는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공동체연구소 연구위원, 비교정치/정치리더십 전공.

측면에서 이른바 “인도적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정도까지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이른바 이러한 추세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정책에 의해 주도 되고 있다. 미국의 개입과 확대 (Engagement and Enlargement) 정책은 전세계에 걸쳐 자유시장경제의 확대와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며 여기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다.

북한 인권법이 2004년 9월 28일 미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그러나 초강대국 미국이 인권이라는 명목 하에 다른 나라의 국가주권에 간섭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것은 인권에 대한 개입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국제적십자는 인권개입을 “인간의 고통을 경감하고 방지하는 어떤 것”으로 정의한다.

인도적 인권개입에 대한 정의는 “성별 인종 그리고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보호와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한다.¹⁾ 무엇보다도 구금과 체포의 권력을 남용하는 국가들로부터 인권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²⁾ 인권개입에 대한 다원주의자들의 결정에 대한 부가적인 장애물은 국가들 사이에 인권원칙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는 문제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이러한 국제인권레짐의 이론적 틀 속에서 잘 설명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인권레짐의 개입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틀인 헤게모니 모델을 분석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헤게모니 모델은 국제인권레짐을 패권국의 군사 및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타 국가들에 대한 도덕적 지도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 혹은 절차로 설명하고 있다. 이 모델은 특히 인권외교를 통해서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적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³⁾

1) Wheeler, Nicholas J. and Bellamy, Alex J.,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World Politics,” John Baylis and Steve Smith, ed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473.

2) Donnelly, Jack,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 Practi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3) Huntington, Samuel, “Religion and the Third Wave,”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1991, pp. 21~42.

패권국가는 이념적 헤게모니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자발적 복종을 얻어 내려 한다. 이러한 헤게모니적 지배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국제레짐이다. 헤게모니적 지배는 단순한 군사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내재화된 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이념적 기제를 사용한다. 국제인권레짐은 이러한 내재화된 자유주의를 전파하는 국제적 수단에 다름 아니다. 국제인권레짐의 경우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진국가들의 자유주의 이념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휴먼라이트와치(Human Rights Watch), 그리고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등이 모두 구미 선진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NGO들이라는 점도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탈북인들의 문제는 이제 중국과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인류차원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인권그룹들은 탈북자들의 인권⁴⁾을 무시하는 북한과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안보정책에 있어서 헤게모니적 주도권을 쥐고 인권에 있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인권레짐,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과 협력 및 연대하여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 봉쇄 및 압력을 가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려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 인권법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대응동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2장에서는 북한 인권법을 둘러싼 국내외의 논쟁을 살펴보고, 3 장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미국의 인권법에 대한 대응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딜레마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간략히 짚어본다.

II. 북한 인권법에 대한 논쟁

북한 인권 관련 논의에서 ‘실패’ 뿐만 아니라 인권 개념과 ‘인권의 보편성’ 명제도 첨예한 논란거리이며 ‘내재적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국가

4) 필립 베이커(Philip Baker)는 “인권은 삶에 대한 권리이며 고문과 자의적 체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권력으로부터 소극적인 자유와 정치적 권리인 제1세대 인권(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종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만이 진짜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제2세대 인권(교육권, 노동권, 최저생활보장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과 3세대 인권(민족자결권, 평화에 대한 권리, 발전권 등 집단적인 권리)이 진정한 인권이라고 주장한다.⁵⁾

민주화와 인권의 세계화에 대해서 최근 동양권의 일부 지도자들은 이를 서구의 교조주의적이고 편협주의(parochialism)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광요 전 싱가포르 총리와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민주주의 확산”은 편협하고, 자기 도취적이며 나아가서 위선적이라 비판하고 조화, 권위, 사회응집력에 기초한 집단적 사회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⁶⁾ 이와 같은 비판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중시하는 인권적 요소확산에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북한 인권법의 주요 내용 및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과 미국의 다른 ‘유사법제’를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기 위한 명분축적이라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설명하려 한다.

1. 북한 인권법의 목적 및 주요내용

북한 인권법 제정의 목적은 북한 주민 및 탈북난민의 인권보호,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내 분배투명성 제고, 그리고 북한개방을 통한 통일한반도의 자유민주화 지향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통일 이후 한반도의 민주주의 지향성은 북한의 지상 과제인 ‘우리식 사회주의’의 남한전파와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북한의 강한 반발을 살 수도 있지만 미국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려는 강한 대외정책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인권법 제정은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분명히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의 전략적 거점을 중국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

5) 권혁철, 「북한 인권문제는 ‘판도라 상자’인가, 『한겨레21』, 446호(2003. 5), <http://www.goodl.or.kr/alim/alim954.htm>(검색일: 2005. 1. 27).

6) Brezesinski, G, “New Dimensions: Foreign Policy and Human Rights,” *Current History*, 1996 september, p. 33.

사표명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 운동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이외에 대북방송과 대북한 라디오 공급 확대, 대북 인도적 지원 배분의 투명성과 감시강화, 탈북자들의 난민 자격 혹은 망명신청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북한 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북한 인권향상에 대한 조치, 북한주민들에 대한 식량지원조치 그리고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조치에 관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은 북한 인권향상을 위하여 북한당국과 협상함에 있어서 인권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향상시키는 NGO그룹들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백만 달러상당의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은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정보가 제한된 북한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유아시아 방송(RFA: Radio Free Asia)과 미국의 소리방송(VOA: Voice of America)을 12시간으로 연장하도록 하였다.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는 군대의 식량전용을 막고 가난한 주민들에게 분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분배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식량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북한정부에 대한 비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북한당국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진전이 없을 때는 어떤 비인도적 지원도 해서는 안 된다. 첫째, 북한의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진전이 없을 때, 둘째, 미국에 살고 있는 북한의 후손이나 친척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셋째, 북한당국에 의해 유괴된 한국인과 일본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넷째, 유괴당한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북한을 떠나서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완전하고도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다섯째, 그들의 감옥이나 노동수용시스템을 현격히 개혁하지 않고 정치적 견해와 행위를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기관도 북한에 비인도적 지원을 할 수 없다.

미 대통령은 북한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지역 밖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지원 또는 합법적 지원을 하는 조직이나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권한이 위임된다. 지원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탈북난민, 변절자들, 이주자들, 고아들을 위한 수용캠프 또는 일시적 거처를 제공하는 일, 둘째, 난민신청, 망명신청, 그리

고 입국허가신청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일 또는 다른 유사한 형태의 보호나 정착을 돕는 일, 셋째,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기 쉬운 북한을 탈출한 여지들에 대한 합법적 지원과 인도주의적 지원이다. 이를 위해 2005~2008년까지 대통령에게 2,000만 달러를 쓸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된다.⁷⁾

2. 북한 인권법에 대한 시각

북한 인권법 실현을 위해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협력이 가장 절실한 시점인데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과 중국과의 근본적인 이해관계의 합일을 이루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또한 인권문제에 대한 거론을 본질적으로 거부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다.⁸⁾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거론이 자신들을 ‘압살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완강한 거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이 북한 인권을 문제 삼는 이유는 북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노림수이자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을 옥죄릴 것이란 반론도 인권단체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문제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⁹⁾

미국과 유럽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탈북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미국의 정책실현에 있어서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중국의 공식적 입장은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단순한 불법체류자 또는 경제적 이주자로 파악하기 때문에 중국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은 북한과의 공조 하에 탈북자들을 색출, 강제 추방하는 등 탈북자들의 탄압과 박해에 힘을 보태고 있다.¹⁰⁾

7) 연간 총 2천 4백만 달러가 지원되며 한화로는 약 2백 70억 원에 달한다.

8) Donnelly, Jack, *op. cit.*, p. 259.

9) 인권운동 단체인 사랑방은 “이라크가 미국에 의해 불법 점령되고 전쟁의 먹구름이 다시 한반도를 드리우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의 북한 침략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서가 채택된 것은 커다란 우려를 자아낸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0) UN의 핸드북에 따르면 한 개인은 자국을 떠나 있을 때 난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이 탈북자를 인터뷰하고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결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북한 인권법에 부정적인 입장은 모두 현실주의적인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현실주의 입장은 국가는 그들의 국가이익만을 추구하고 국가는 그들의 국가이익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개입은 배제된다는 것이다.¹¹⁾ 그러나 국가주권은 합의된 국가레짐 속에서 국제규범, 국제헌장 국제기구들에 의해 축소되기 때문에 레짐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권에 대한 개입의 여지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는 르완다, 코소보, 체첸, 동티모르, 리베리아 수단 등의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점차 “인권”이 “주권”에 우선할 수 있다는 새로운 국제규범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¹²⁾ 그리고 무력으로 간섭할 수 있는 정당한 관심사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인도적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정도까지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이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와 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¹³⁾

북한 인권법이 가져올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인권을 빌미로 북한정부를 압박하는 유용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¹⁴⁾과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기보다는 대북한 협상 등에 있어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미국의 유리한 입지를 위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¹⁵⁾

국제사회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국제연합헌장(UN Charter)의 채택이었다. UN헌장은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신장이 UN의 기본적인 목적들 중의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다. 1971년 국제사법재판소는 UN헌장의 제56

11) Wheeler and Bellamy, *op. cit.*, p. 473.

12) 제54차 유엔 총회에서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은 기존의 ‘국가주권에 앞서는 개념으로 ‘개인주권’을 강조하면서 “헌장의 어떠한 조항도 국경을 넘어서 타국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유엔의 역할 강조를 시사하였다

13) 미국의 개입과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 정책은 전 세계에 걸쳐 자유시장경제의 확대와 민주주의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며 여기에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은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이다.

14) 실제로 인권이 국제문제가 되자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을 줄이고 먹고살기 위한 단순 탈북자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하는 등 실질적인 인권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5)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반공화국 모략 단체들을 재정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한편 일부 나라들에 압력을 가해 우리의 국제적 영상(이미지)을 흐리게 하며 우리 제도 전복을 위한 본격적인 환경조성에 달라붙고 있다”고 비난했다. http://www.voiceofpeople.org/new/news_view.html(검색일: 2004. 10. 11).

조는 인권보호에 대하여 개별적인 국가들은 법적인 의무를 갖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하였다.¹⁶⁾ 다양한 UN 인권협정들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되며, 따라서 그러한 국가들을 지원하지 말 것을 UN 회원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과 미국은 UN 회원국으로서 개별적으로는 물론 협력하여 다른 모든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적으로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을 지원해서는 안 되며 UN과의 협력하에 그러한 인권침해에 개입하여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최근 핵문제, 식량사정문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한의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인권정책이 ‘미국식 관념’을 타국에 강요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UN에서 추구하는 보편적 인권의 내용과 상반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적 일방주의라고 잘라 비난하기는 어렵다.

한편 북한 인권문제제기를 무조건 보수우익의 당파성, 혹은 냉전적 사고로 간주하는 시각도 문제가 많다. 이 시각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강대국의 패권적 인권외교와 동일시하고 있다. 북한 인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권문제들은 매우 정치적이고 논쟁적이다. 또한 어떤 입장에 입각해서 인권문제를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북한 인권법”에 대해 흑백논식의 논쟁은 국익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법”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정부가 어떻게 미국과 유연한 정책조정과 협조를 해나가는가가 향후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3. 다른 유사법제와 비교

참여연대를 포함한 진보 NGO 들은 북한 인권법에 대해 북한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유사한 법을 보면 그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표 1 참조>.

16) Driscoll, Dennis,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Law,” W. Laqueur and B. Rubin eds., *The Human Rights Reader*,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79, p. 43.

<표 1> 미국 의회법의 성격과 정권교체와의 상관성

법종류 \ 성격	정권교체 내지 정권재제	정권의 변화유도
이란 민주화법	○	X
이라크 자유화법	○	X
버마의 자유와 민주화법	○	○
쿠바의 자유와 민주주의 공고화법	X	○
북한의 인권법	X	○

미국의 쿠바, 이라크, 버마 그리고 이란 민주화법을 보면 미국은 그들 정권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언급한다. 만일 법이 정권교체라면 그렇게 언급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정권교체라는 내용이 없다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 자유화법에서는 미국은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이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는 것과 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목표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¹⁷⁾

2003년 통과된 이란 민주화법은 정권교체를 강조하지 않았고 2004년 7월에 통과된 이란 자유화와 지원법은 이란에서 정권교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쿠바의 자유와 민주주의 공고화 법은 카스트로 정부에 대한 정권교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2003년 버마의 자유와 민주화법에서 미국은 현 군부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대(National League for Democracy)를 지지한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법에는 정권교체 또는 정권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이 북한정권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불평한다.¹⁸⁾ 미국의 정치인 가운데 일부는 북한정권이 붕괴하기를 원하는 정치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 인권법을 지지한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북한정권을 전복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다른 나라 인권에 관한 법제에서 북한보다 인권상황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라는 정책대안을 택했다. 그런데 미국에

17) 이라크 자유화법 3조는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을 권좌에서 축출하며 민주주의 정부를 세운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18) 다른 법과는 달리 북한 인권법은 경제제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쿠바 자유화와 민주주의 공고화 법은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어 있다.

있어서 북한정권은 비록 최악이지만 다소 온정적으로 대우하고 있다.¹⁹⁾

북한 인권법에 대한 다른 반대견해는 만일 그 법이 통과된다면 이라크에서처럼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예비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너무 극단적이다. 만일 그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2003년 미얀마 자유화법과 이란 민주화법은 버마와 이란을 공격하는 예비조치였음에 틀림없다. 쿠바 자유와 민주화공고화법이 통과 된지 13년이 지났지만 미국이 쿠바를 공격한 적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분석해볼 때 인권 또는 민주화법과 군사적 공격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4. 북한의 인권인식과 문제점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는 2005년 1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일상적으로, 그리고 터무니없이 거의 모든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떠한 인권단체도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북자 및 수용소 탈출자들과 면접을 통해 나락 같은 북한 인권상황을 기록해 왔다”고 밝혔다.²⁰⁾ 북한에 관한 조사된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TV와 라디오 채널은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을 탈출한 난민들에 따르면 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TV를 시청하는 주민들로부터 구전을 통해 바깥 세계에 관한 지식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송환된 탈북자는 종종 고문을 받으며 조사받은 뒤 식량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월경한 초범일 경우 통상 석방된다.²¹⁾ 그러나 재범이거나 중국에서 한국인이나 서방인, 특히 선교사와 접촉한 경우는 강제노동수용소 복역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북한 형법상 이른바

19) Kim, Soo You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Comparison with Other U.S. Legislation Concerning Foreign Countries,” 2004, <http://www.dailynorthkorea.com>(검색일: 2004. 1. 15).

20) Human Rights Watch, “North Korea,” 2005, <http://www.hrw.org>(검색일: 2005. 1. 28).

21) 뉴스레터, ‘조·중 국경소식’에 따르면 중국 ‘문세(중국으로 탈북해 송환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화형 최소 2년형, 한국·문세(한국행을 시도하다 송환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소 교화형 5년을 선고받는다’고 한다. <http://www.dailynk.com>(검색일: 2005. 1. 27).

반국가 사범인 반역, 폭동 외에도, 1990년대 중반 대기근 때 법개정을 통해 식량 절도범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²²⁾ 사람이 붐비는 장터나 어린이들 앞에서 공개처형이 이뤄졌다는 탈북자들의 목격담이 무수하다. 대기근 이래 북한의 상당수 지역에서 의무교육마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나 학생들이 수업보다는 식량 구하는데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엄격한 계급에 따른 차등화로 인해 일반 주민, 특히 어린이들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도 그대로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수 병원에서 의사들이 마취도 없이 수술을 집도하거나 주사 바늘과 붕대를 재사용한다.

인권이 보편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개념인가 하는 문제는 세계인권선포된 이후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신생독립국과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인권규범이 서구적인 가치에 대한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자국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제기하여 왔다.²³⁾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 혹은 자주적 인권이라는 개념도 이러한 비판 가운데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의 인권은 개인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인권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권리로 한정되고 있다. 북한은 이것을 인권의 당파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권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계급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호할 계급의 인권과 보호받지 못할 계급의 인권은 다르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극단적인 집단주의적 입장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만일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집단적 인권만이 존재하고 개인적 인권은 존재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국제인권규범과 양립될 수 없는 ‘북한식인권’일 따름이다.

둘째, 정치적 시민적 인권과 경제적 및 사회적 인권 등 두개의 인권 카테고리 간의 관계에 대한 편협한 인식이다. 북한의 인권이론은 근본적으로 이 두개의 인권범주를 분리하여 고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치적 인권은 부르주아계급의 인권

22) 조선일보, 「HRW ‘북 인권은 나라 같은 상황」(2005), <http://www.dailynk.com>(검색일 2004. 1. 26).

23) Pollis, Adamantia, “Development, Growth, and Human Rights: The Case of Turkey,” David P. Forsythe, ed.,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1, p. 237.

사상이며 경제적 인권은 사회주의 인민대중의 인권이라는 계급적 구분방식이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회를 계급사회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초계급적인 인권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인권이론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 북한의 경우, 경제적 인권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는 체제라면 오히려 정치적 시민적 인권을 실현하고 보호하는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의 인권사상은 세계의 어디서나 정치적 인권 및 경제적 인권이 모두 함께 실현될 수 있고 또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국제인권규범이 내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인권규범이 과연 실정법적인 수준의 실효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국제인권규범이 내포하고 있는 도덕적 가치는 널리 인정되고 있다. 오늘날 인권규범이 국제사회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권보호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도덕성 때문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권규범들의 발전은 인권보호가 인류사회 전체의 보편적 문제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인권규범을 단순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헤게모니로 파악하고 있다.²⁴⁾

북한은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인권문제를 내정간섭, 혹은 주권침해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북한은 인권문제를 제국주의적 침략과 약탈에 비유하고 있으며 인권문제에 대한 강경하고 단호한 대응은 국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북한의 자주적 인권이론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개념과 양립될 수 없다.²⁵⁾ 현재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자주적 인권이론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외면하고 개별적인 인권기준만을 고집하는 것이다.

24) 이원웅, 「북한인권문제의 성격과 인권정책의 방향」(2003), <http://www.naculmok.org> (검색일 2005. 1. 27).

25) 북한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우리의 주체 사회주의 정권은 단순한 권력기관이 아니라 근로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이익의 보호자로서 철저히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dailynk.com> (검색일: 2005. 1. 26).

III. 미국의 인권공세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입장

중국은 탈북난민이 대량으로 중국영토에 유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찾는데 서로 협조하고 있으며 탈북자가 검거되면 북한 당국으로 넘긴다. 비록 이러한 조치들이 중국과 유엔 사이에 맺은 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지만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기 위하여 북한을 완충지역으로 두기를 원한다. 북한 인권법은 유엔고등판무관이 중국에 있는 탈북난민을 자유롭게 접촉하고 난민수용소와 임시거처를 마련하도록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불협화음을 촉발했다.

본 장에서는 미국의 인권법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및 중국의 인권실태 및 미국의 인권공세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탈북난민에 대한 중국 및 북한의 입장 및 탈북난민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리고 북한 인권법제정 이후 그 파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대한 북한의 반응

북한은 미국이야말로 국가사회 제도자체로부터 출발하여 초보적 인권도 보장될 수 없는 인권무풍지대이며 인권범죄 기록보유자로서 인권문제를 입에 올릴 체면도 자격도 없다고 항변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3조에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인신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어 있다 그들은 미국에서는 돈 있고 권세 있는 특권계층만이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총기류에 의한 살인범죄가 시간을 다투며 감행되고 각종 폭력범죄의 성행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인신불가침권이 항시적으로 위협,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인권문제의 열악성을 지적한다.²⁶⁾ 그리고 공식자료들을 거론하면서 미국에서는 해마다 평균 약 2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폭력행위의 위협을 받고 180여만 명이 작업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폭력조직 증가와 마약관련범죄, 감옥수감자 비율, 수감자 학대에서도 단연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며 미국의 주장이 제 처

26) 김혜성, 「반동적 인권공세에는 혁명적 인권공세로, 힘에는 힘으로」, 《노동신문》 2004년 12월 24일자

지도 모르고 ‘국제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는 가소로운 행위라고 꼬집고 있다. 또한 미국은 생겨날 때부터 인디언을 멸살시키고 그 피비린 무덤위에 세워진 나라로 지목하고 1980년대 그레나다 와 파나마 침공 1990년대 페르시아만 전쟁 발칸 전쟁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 감행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만 놓고 보아도 인권유린국으로서 그리고 인권범죄의 특등상습자로서의 면모를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한다.²⁷⁾

1948년에 채택된 ‘집단학살범죄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는 집단의 성원들을 죽이고 집단의 성원들에게 심한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히며 집단에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물리적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생활조건을 의도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집단 학살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1966년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는 모든 인민들이 자결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인민들의 생존수단을 빼앗을 수 없다고 규제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유엔도 국제법도 무시하고 날강도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하고 점령한 미제침략자들은 이르는 곳마다 무고한 인민들을 상대로 하여 매일 피비린 살육만행을 감행하여 침공 이래 약 10만 명이 훨씬 넘는 무고한 주민들을 죽였다고 조소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이라크 함락과정에서 사용한 고의적 열화우라늄탄 사용은 인간애에 반대되는 범죄행위이며 부시의 반테러전쟁은 합법적인 주권국가들에 대한 횡포한 국권침해범죄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인권은 곧 국권”으로 간주하며 인권은 국권에 의해 보장, 담보된다는 입장이다. 국권이 있어야 인권도 있으며 국권이 없으면 인권도 없다는 논리를 펴며 국가자주성을 생명처럼 소중히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당국에 따르면 미국이 국가자주권 위에 인권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배경에는 인권과 국권을 별개화하고 주권국의 주권유린과, 정권전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²⁸⁾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미국이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선

27) 위의 기사.

28) 중국의 신화사통신은 조선의 ‘제도전복’을 노린 북한 인권법이라는 것을 채택 발표시킨데 이어 북한 인권특사까지 파견할 것을 계획하고 그 인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언급하면서 최근에 와서 미국은 북한 인권법이 국제사회의 규탄과 배격을 받자 그것이 조선의 ‘제도전복’이 아니라 ‘경제체도를 변경’시키는데 있다고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은 자위적 역제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가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04년 12월 28일자

택성과 2중기준적용을 일삼으면서 그것을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 체도전복, 정권교체를 합리화하는데 이용하려는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택포기를 통하여 무장 해제시키려는 저들의 술책과 타산이 보이지 않게 되자 이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체제전복’, ‘제도붕괴’를 실현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당국의 주장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라크를 예로 들면서 국가자주권을 떠난 인권,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인권은 신기루와 같고 노예들의 ‘인권’과 다를 바 없으며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체도전복의 만능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오직 강력한 물리 적힘으로 맞서 싸우는 것만이 진정한 인권옹호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²⁹⁾ 북한은 미국이 만든 북한 인권법을 체제전복 및 제도붕괴를 노린 대조선적대시선언과 심리모략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체제전복 활동에 가담하는 단체 및 개인들에게 미국정부의 예산으로 매해 2,400만 US\$를 지출한다고 규제하는 것은 악랄한 대조선 적대선언으로 공화국의 사회제도와 정치체제에 대한 체질적 거부감이 골수까지 차 있고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환장이 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의 극단적인 광기의 발로라고 했다.³⁰⁾

그러면서 미국이 ‘반테러잔’을 ‘민주주의 전파’로 광고하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정치화, 국제화하여 공화국에 대한 ‘인권 공세를 그 어느 때 보다 강화하고 ‘반테러전쟁’을 이복으로 확대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한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행위를 놓고 볼 때 실사 핵문제가 타결된다고 하여도 그들이 ‘인권’, ‘미사일’, ‘생화학무기’, ‘마약’, ‘종교’ 등

29) 중국의 신화사통신은 역사적으로 미국은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선택성과 2중기준적용을 일삼으면서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의 구실로 ‘인권문제’를 고안해 내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 정부전복의 ‘합리화’에 써먹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이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며 최악의 화신이라는 것은 이라크 사태가 더욱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 사태는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 힘으로 지켜지지 않는 인권이란 망상이며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체도전복의 만능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오직 물리적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것만이 진정한 인권옹호의 유일한 선택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조선은 자위적 억제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가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04년 12월 28일자.

30) 리현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노동신문》 2004년 12월 15일자, 6면

공화국의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어 조미관계를 계속 악화시키고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려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고 했다. 미국의 인권공세는 결국 강력한 군사력 억제력에 기초한 공화국의 초강경대응정책에 의해 실패와 좌절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³¹⁾ 결국 북한은 자주성을 지닌 모든 나라들은 힘으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세계에 전파하려는 미제의 책동의 범죄성과 위험성을 똑바로 간파하고 침략적인 ‘반테러전’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³²⁾

2. 미국의 인권공세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은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대해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의 구실로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침략과 전쟁 그리고 정부전복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³³⁾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미국무성의 연례인권보고서에 대처하여 발표한 「2004년 미국의 인권기록」에서 미국의 인권실태를 폭로하고 비판하였다. 문건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금권에 의해 조종되는 민주주의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식 민주주의는 실제상 금전경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미국대통령선거와 국회선거에 소비된 총비용은 약 40억 US\$에 달하였다. 특히 대통령선거는 미국역사상 비용이 제일 많이 든 선거였는데 그 비용은 2000년의 10억US\$로부터 17억US\$로 뛰어올랐다. 선거과정에서 정당들과 그룹들은 선거에 대한 저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확대하는데 자금을 이용하였다. 많은 정치자금을 대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려고 후보자들은 당선된 다음 그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³⁴⁾ 이러한 현상을 두고 미국신문 《볼티모어선》 지는 금전에 의한

31) 뉴욕타임즈는 점차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부당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북조선교섭을 시도하였던 미국이 오히려 고립되어가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리현도,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업살정책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노동신문》 2004년 12월 15일자, 6면

32) 최학철, 「힘으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침략교리 ‘반테러전」, 《노동신문》 2004년 12월 15일자.

33)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도 ‘북한 인권법’을 채택 발효시킨 미국은 그 한 고리로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들에 대한 모략선전을 벌리기 위해 책동을 벌리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은 자위적 억제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가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04년 12월 28일자.

‘권력구매’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미국사회는 폭력범죄가 성행하고 사업유희행위가 매우 심하며 주민들의 생명과 자유, 신변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사회라고 하면서 문건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³⁵⁾

2004년 11월 29일 미사법성이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2003년에 12살 이상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약 2,400만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살인과 강탈 등 폭력범죄 사건은 무려 138만,259건으로서 인구 10만 명당 475건이나 된다 그 중 살인사건은 2002년에 비해 1.7% 늘어나 1만6,503건에 달하였으며 12살 이상의 미국인 44명당 1명이 그 피해를 입었다. 세계에서 첫째가는 ‘총기류국가’인 미국에서는 총기류범죄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미국에서는 총기류에 의해 해마다 3만1,000명이 죽고 7만5,000명이 부상당하고 있다 문건은 미국에서 경찰들의 폭력행위와 사법유희권행위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328건의 형사범죄사건이 잘못 판결된 것으로 하여 73명이 사형을 연도 받았으며 1,000여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이 마치 자유인들의 낙원인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비율은 세계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미국인들 가운데서 평균 142명당 1명이 철창 속에 갇혀 있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중국국무원의 보고에 따르면 감옥에서 수감자들이 갖은 학대를 다 받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인 경우 성폭행까지 당하고 있다고 도리어 미국을 역공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³⁶⁾ 북한 인권법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탈북난민이 자국으로 영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이민법을 마련했다. 10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산하는 탈북난민으로 골치를 앓는 중국은 북한여성을 가정부로 고용하지 말 것을 명했다.³⁷⁾ 수년간 북한핵문제 해법을 모색해오던 중국은 마침내 북한을 지원하는 전통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34) 「중국 미국의 인권실태를 폭로단죄」, 《노동신문》 2005. 3. 12.

35) 위의 기사.

36) 북한정권붕괴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며 기아에 허덕이는 수백만에 달하는 북한주민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더욱이 고도로 군대화된 사회에서 정권의 붕괴는 총기류 방출과 함께 인권에 해로운 부정부상태가 될 것이다.

37) Lee Kap Son, "Mixed Response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e Korea Times*, Oct. 12, 2004, <http://new.ncmonline.com>(검색일 2004. 1. 14).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원하는 중국의 야심은 남한의 국가안보이익, 번영 그리고 자유민주통일과 충돌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인권법 제정의 목적이 한반도에서 자유민주 통일국가 달성을 지향한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DJ 정부 이후 한국정부는 독일식의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천명했고 참여정부 또한 인위적인 북한정부전복보다는 장기적 북한체제의 변화를 통한 통일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기조로 볼 때 미국의 인권법은 한국정부의 입장으로는 부담스런 면도 없지 않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있어서 자유민주 통일국가라는 분명한 노선은 중국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통일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이루어진다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반도는 중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문제의 핵심은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 확대 정책의 충돌이다. 중국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교란할 수 있는 인권,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동북아에서 확산하려하기 때문이다.

2005년 1월 12일 중국당국은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의원들이 베이징호텔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에 관한 기자회견을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방해했다.³⁸⁾ 중국정부는 미국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사회결속력이 와해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중국이 탈북난민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자국에 숨어있는 탈북난민을 돕는데 자금을 대어주는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국당국은 대의적인 입장에서 탈북난민들을 보호하는 국제적 의무를 존중해야하며 자국에서 망명한 사람들을 체포해서 고문과 감금 심지어 죽음으로 이어지는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³⁹⁾ 또한 중국당국은 국제 원조조직들이 북한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망명을 원하는 그들에게 거처와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며 그들이 원하는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고등관무관 활동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38) "China stops S. Korean lawmakers from holding press conference," *2004 Japan Today*, <http://www.japantoday.com>(검색일: 2005. 1. 17).

39) "Speak Out Abou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2005, http://hrw.org/english/docs/2004/04/16/nkorea8455_txt.htm(검색일: 2005. 1. 14).

EU와 일본이 공동으로 성안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2005년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과 2004년의 결의안보다 훨씬 강경한 내용으로 인권개선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이를 유엔총회에서 다룰 것이라는 것이다.⁴⁰⁾ 대체로 미국중심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국제기구 휴먼라이트워치(HRW) 또는 국제앰네스티, 프리덤하우스 그리고 프랑스의 인권 감시단체인 인권수호자 보호관찰단(OPHRD) 등을 통해 대변되고 있다. 이는 세계의 정치경제 중심에 있는 미국이 그와 같은 인권레짐을 군사력 및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타 국가들에 대한 도덕적 지도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미국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이념적 헤게모니를 통해 다른 나라의 자발적 복종을 얻어 내려한다. 이러한 헤게모니적 지배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구가 바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레짐들로 볼 수 있다.

IV. 결론: 한국의 정책대안

한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대북비난과 냉전적 남북대결만을 강화하는 문제제기가 아니라 북한체제의 안정과 사회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을 택해야한다. 북한의 인권향상을 위해 현실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정책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유화정책과 관여 및 교류정책을 펴야한다. 그것이 단기적으로 인권을 말살하는 북한정권담당자에게 힘을 실어 줄지는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교류를 통해 북한당국을 변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노력을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인권개선 요구는 정작 남북대결의식을 고취시키고 오히려 북한정권을 경색시키거나 총기통제불능의 혼란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어 고도로 군사화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일관된 유화정책의 실시로 북한과의 접촉점을 이어가되 북한 인권 개선을 주장하는 국제기구와 NGO 세력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북한당국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해야 구경꾼이 아닌 주도적 입장에서 북한

40) 모세원, 「북인권 비판하면 한반도에서 전쟁난다」(2005. 4. 14), <http://www.breaknews.com>(검색일: 2005. 4. 14).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⁴¹⁾ 북한 인권문제 개선의 관건은 북한의 체제 변화와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북한 통치엘리트가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인권상황 및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으므로 동북아 전체의 인권상황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대응동향에 대해 연구 한 바 대략 다음과 같이 논의를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하며 미국은 자국에게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국 가인 중국에 대하여 인권을 이슈로 봉쇄하기 위한 수순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미국은 북한 인권법을 통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중국의 인권상황을 부각 시키면서 탈북자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중국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세계인들의 주목을 환기시키려 계획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인권법은 장차 북한과 중국을 무력으로 공격하려는 명분축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중공조의 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과 중국 양국은 미국의 북한 인권법 실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탈북자나 탈북자를 돕는 단체나 개인을 색출하여 체포하고 국경수비대의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은 이민법 개정법을 만들어 탈북인의 중국유입을 차단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넷째, 탈북을 돕는 국제NGO 단체들은 미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북한자유화와 민주화 그리고 인권향상을 위해 UN과 연계하여 북한정권개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새로 공민증을 만들어 체제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권법에 나타난 라디오방송을 통한 북한 내 정보소통 활성화 정책을 북한체제를 허물기 위한 독소적 사상 주입책동으로 비난하며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유엔인권위원회의 탈북자보호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의 접촉

41) 남한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대응은 조용한 외교를 내세우며 유엔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 표결 때 이에 불참하거나 기권을 하면서 북한 인권을 거론하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다는 현실적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 인권을 논하는 것은 북한정권붕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국제적 인권규범에 북한정권당당자가 동참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인권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정의 요구 그리고 망명신청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 양국 간에 협약·협정 철폐 요구와 함께 북한 당국에 주민의 정치참여 확대, 사법제도의 투명화, 피의자와 수형자의 처우 개선 등 전반적인 인권침해 방지와 시정을 위한 신속한 조치 그리고 북한에 유엔인권특사파견 등의 조치와 이러한 국제레짐의 요구 뒤에는 미국의 패권이 뒷받침되어 있다. 이렇듯 인권을 위한 국제레짐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같은 내재화된 이념적 기제를 이용해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은 헌팅턴의 헤게모니 모델로 보다 적실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유연한 협조체계를 통해서만이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조중간의 공조체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인권법을 벗어나서 독자적 전략적 균형자로 행세한다면 한미동맹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강력한 북한과 중국의 공조세력 앞에 한국은 북한 내에 있는 굶주린 주민인권과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비굴한 구경꾼 내지는 방관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⁴²⁾ 또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결의안을 계속적으로 기권한다면 유엔 헌장의 원칙을 위배한 나라로 낙인찍혀 유엔헌장 제6조에 의거하여 유엔으로부터 축출되는 처욕을 당해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⁴³⁾ 따라서 북한정권이 안정적이라고 가정할 때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을 제외하고 대북지원과 교류정책이 북한 인권 개선 여부와 어느 정도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방안으로는 첫째, 북한 인권법은 중국패권 견제와 북한고립을 위한 외교정책수단인 동시에 대북봉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의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을 완화시키는 완충 역할을 한국정부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북한 인권

42)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남한정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대북접근에 있어서 남한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반대하는 친북 좌파세력의 연대로 국내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43) 모세원, 「북인권 비판하면 한반도에서 전쟁난다!」(2005. 4. 14), <http://www.breaknews.com>(검색일: 2005. 4. 14).

법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핵 보유와 남북경제협력은 분리하되 미국과도 정책공조의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패권적 속성을 드러낸다고 하여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한국은 동북아의 외톨이로 남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교류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 하의 단힌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의 경쟁국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요구 사항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며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을 걷게 되면 인권도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정치 경제 발전 과정에 유의하면서 북한 지도층에 대한 인권정책 변화를 위한 설득과 압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조선은 자위적 억제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가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04년 12월 28일자
- 「중국 미국의 인권실태를 폭로단죄.」 《노동신문》 2005년 3월 12일자
- 권혁철, 「북한 인권문제는 ‘판도라 상자’인가.」 『한겨레』 446호(2003. 5), <http://www.goodl.or.kr/alim/alim954.htm>(검색일: 2005. 1. 27).
- 김혜성, 「반동적 인권공세에는 혁명적 인권공세로, 힘에는 힘으로.」 《노동신문》 2004년 12월 24일자
- 리현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노동신문》 2004년 12월 15일자
- 모세원, 「북인권 비판하면 한반도에서 전쟁난다?」(2005. 4. 14). <http://www.breaknews.com>(검색일 2005. 4. 14).
- 이원웅, 「북한인권문제의 성격과 인권정책의 방향」(2003). <http://www.nadulmok.org> (검색일 2005. 1. 27).
- 조선일보, 「HRW ‘북 인권은 나라 같은 상황」(2005). <http://www.dailynk.com> (검색일 2004. 1. 26).
- 최학철, 「힘으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침략교리 ‘반테러전」. 《노동신문》 2004년 12월 15일자

- Brezesinski, G. "New Dimensions: Foreign Policy and Human Rights." *Current History*, 1996 september.
- Donnelly, Jack,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 Practi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 Driscoll, Dennis,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Law." W. Laqueur and B. Rubin eds., *The Human Rights Reader*.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79.
- <http://www.dailynk.com>(검색일: 2005. 1. 26, 27).
- http://www.voiceofpeople.org/new/news_view.html(검색일: 2004. 10. 11).
- Human Rights Watch, "North Korea." 2005, <http://www.hrw.org>(검색일: 2005. 1. 28).
- Huntington, Samuel, "Religion and the Third Wave."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1991.
- Kim, Soo You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Comparison with Other U.S. Legislation Concerning Foreign Countries." 2004, <http://www.dailynorthkorea.com>(검색일: 2004. 1. 15).
- Lee Kap Son, "Mixed Response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e Korea Times*, Oct. 12. 2004, <http://new.ncmonline.com>(검색일: 2004. 1. 14).
- Pollis, Adamantia, "Development, Growth, and Human Rights: The Case of Turkey." David P. Forsythe, ed.,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1.
- Wheeler, Nicholas J. and Bellamy, Alex J.,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World Politics." John Baylis and Steve Smith, ed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China stops S. Korean lawmakers from holding press conference." *2004 Japan Today*, <http://www.japantoday.com>(검색일: 2005. 1. 17).
- "Speak Out Abou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2005, http://hrw.org/english/docs/2004/04/16/nkorea8455_txt.htm(검색일: 2005. 1. 14).

● 투고일 : 2005. 1. 31.

● 심사완료일 : 2005. 5. 27.

● 주제어(keyword) : 북한(North Korea),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인권법(Human Rights Act), 중국(China), 공유가치(Shared Values), 정책대안(Policy Option)